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한정애·장철민·박희승

민병덕 · 문진석 · 이수진

이학영 • 박지혜 • 강선우

위성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,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%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,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「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

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,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5호) 및 「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이재민(罹災民)의"를 "이재민(罹災民) 등의"로, "이재민 보호와"를 "이재민 등의 보호와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대상자"를 "대상"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호의 사람을"을 "호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동반하는 반려동물(이하 "반려동물"이라 한다)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호기관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이재민(罹災</u>	제1조(목적) <u>이재민(罹災</u>		
<u>民)의</u> 구호와 의연금품(義捐金	民) 등의		
品)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			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			
정함으로써 <u>이재민 보호와</u> 그	<u>이재민 등의 보호와</u> -		
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			
로 한다.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구호기관"이란 제3조에 따	3		
른 구호 <u>대상자</u> (이하"이재민			
등"이라 한다)의 거주지 또는			
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			
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			
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			
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			
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			
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			
같다)을 말한다.		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구호의 대상) 이 법에 따른	제3조(구호의 대상)		
구호는 다음 각 <u>호의 사람을</u>	호를		

대상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<u> <신 설></u>

제4조(구호의 종류 등) ①·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③ (생 략)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동 반하는 반려동물(이하 "반려 동물"이라 한다)
- 제4조(구호의 종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구호기관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 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